

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2017년 제2회 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인천교통공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단위 : 명)

채용분야		계	일 반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직급
			공개경쟁	제한경쟁		
계		58	49	7	2	9급
사 무	사무1	7	5	-	2	
	사무2	7	-	7	-	
전기전자	전 기	11	11	-	-	
	신 호	9	9	-	-	
	통 신	3	3	-	-	
	전 자	2	2	-	-	
시설환경	토 목	1	1	-	-	
	건 축	1	1	-	-	
	기계설비)	13	13	-	-	
차 량		4	4	-	-	

※ 제한경쟁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 모집

※ 취업지원대상자 구분 채용 (지역제한 없음)

※ 채용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 채용분야 및 인원 변경사유 발생시 필기시험일 7일전까지 수정공고 예정

2. 응시 자격요건

가. 연 령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공고일 기준)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및 자격

- 공개경쟁 채용분야 (사무1, 전기, 신호, 통신, 전자, 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
: 2017.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상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제한경쟁 채용분야 (사무2)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어야 하고 지역제한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채용분야 (사무1)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로 지역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현재, 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2017. 7. 11.예정)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마. 주·야간 교대(교번) 근무 가능자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22:00~06:00)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임용 가능

바.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6의3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공고일 기준)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철도안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제한경쟁채용 응시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철도안전법 제11조)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인 사람

아.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합격판정을 받은 자
- 취업지원대상자채용 응시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한경쟁채용 응시자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 규정에 합격판정을 받은 자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6. 5.(월) 09:00 ~ 6. 12.(월) 18:00

나.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ictr.or.kr>)

다. 접수방법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4.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시 험 방 법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1차 : 필기시험	2017. 6. 19.	2017. 6. 24.(예정)	2017. 6. 28.
2차 : 인·적성검사	2017. 6. 28.	2017. 7. 1.(예정)	
3차 : 면접시험	2017. 6. 28.	2017. 7. 6~7.(예정)	2017. 7. 11. (최종합격자 발표)

※ 매 시험장소 공고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합니다.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용 불가합니다.

5.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배점) : 3과목(과목별 100점 총 300점, 100문항)

채용분야		시험과목 및 배점 (3과목 300점, 100문항)	
		선택 1과목 (100점, 50문항)	공통 2과목 (100점 각 25문항)
사 무	사무1	행정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법학개론, 통계학개론, 전산학개론 중 택 1	영 어 일반상식
	사무2		
전기전자	전기	전기이론	
	신호	전기이론, 전자일반, 통신일반 중 택 1	
	통신	통신일반	
	전자	전자일반	
시설환경	토목	토목일반(궤도일반 포함)	
	건축	건축일반	
	기계설비	기계일반	
차 량		기계일반, 전기이론, 전자일반 중 택 1	

나. 필기시험 합격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소수점 미만 자리는 버림)
단, 채용 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3배수

다.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2 준용)
- 합격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부정응시자 등으로 인해 적격자가 2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

6.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가.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측정내용

- 인성검사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
- 적성검사 : 문제해결력, 수리력, 이해력 등 측정
- 면접시험 : 품행, 예의, 전문지식, 발표력 등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인 사람 중에서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인·적성검사는 면접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7. 서류제출

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시기 : 2017. 7. 1. 예정(인·적성검사 당일)

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공개경쟁채용 응시자의 경우 2017. 1. 1부터 인천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응시자는 병역사항 기재 필)
-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장 발행)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원본 지참)
- 가산점 적용 대상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청렴이행서약서

※ 각종 증명서는 유효기간내의 원본제출만 인정

8.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가산방법

- 1차 필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에 적용
-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제한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자 격 증	가산비율
,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선택과목 만점의 5%
산업기사 이상	선택과목 만점의 5%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선택과목 만점의 3%

- 가산대상 : 채용분야 자격증(붙임1) 소지자로서 해당하는 채용분야에 응시하는 자

○ 가산방법

- 1차 필기시험(선택과목)만 가산을 적용하되 선택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일정비율(위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자격증 중복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자격증은 사무분야(사무1, 사무2)에 한하여 가산

9. 유의사항

- 가. 접수 마감시간대에는 동시 접속에 따른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나. 채용 분야(사무1, 사무2, 전기, 신호, 통신, 전자, 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별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중복 지원 불가)
- 다.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라.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마.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우리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 바.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불가하며,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사. 제한경쟁분야 최종합격자는 임용 당시까지 유효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 아. 임용 후 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자.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차.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요청서(붙임4)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주며, 180일 이후에는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합니다.
- 카.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ictr.or.kr>) 내 '채용문의'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공 통)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 무 1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교통		교통	교통 사무자동화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	정보보안	
사 무 2	사무1, 전기전자, 시설환경 분야의 가산대상 자격증				
전기전자 (전기, 신호, 통신, 전자)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응용		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카드
			메카트로닉스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설비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 신호, 통신, 전자)			산업안전	산업안전	
	전기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시설환경 (토목, 건축, 기계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방수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보선	철도보선	보선
					측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도시계획		도시계획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목,건축, 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연삭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배관		배관	배관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온실가스관리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목,건축, 기계설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연삭 공유압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전자부품장착	기계정비 전자부품장착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배관		배관	배관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응용				전자카드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설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분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전기안전				
	소음진동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통폐합 포함)은 인정, 단 가산자격증에 해당해야 함

입 사 지 원 서

기본지원사항

모집구분	일반	선택과목	
채용분야		수험번호	

기본인적사항

사 진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전입일(공개경쟁)			
	E-Mail			

최종학력사항

학교 구분	학교명	전공	졸업구분

경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담당업무	직위	퇴직사유

자격 및 면허사항

자격증	등록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기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 :
장애인	장애등급 :

병역사항

군필여부		군별		병과		계급		전역사유	
복무기간				면제사유					

자기소개서

1. 나의 소개

2. 지원동기

3. 입사 후 계획

지원서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차후 지원서상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합격 또는 입사가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 지원자 (서명)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공지

1. 이 공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채용 홈페이지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2-451-2079)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17년 6월 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60g/㎡(재활용품)]